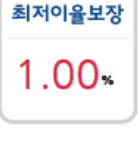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슈퍼플러스(1601) 리빙+ 재가입계약용(2601)(자동갱신형) 상품요약서

● 상품특성 및 전달정보



상품특성	전달정보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대 1억원]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저축성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금리 변동	금리연동형 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보험료 적립금 부리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입니다.	 최저이율보장 1.00%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부리이율입니다.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변동가능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일반인 가입시 불리] 질병 있어도 OK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일반인 가입시 불리] 제한적 심사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부적합] 비례 보상	실손형 담보는 2개이상의 계약을 중복하여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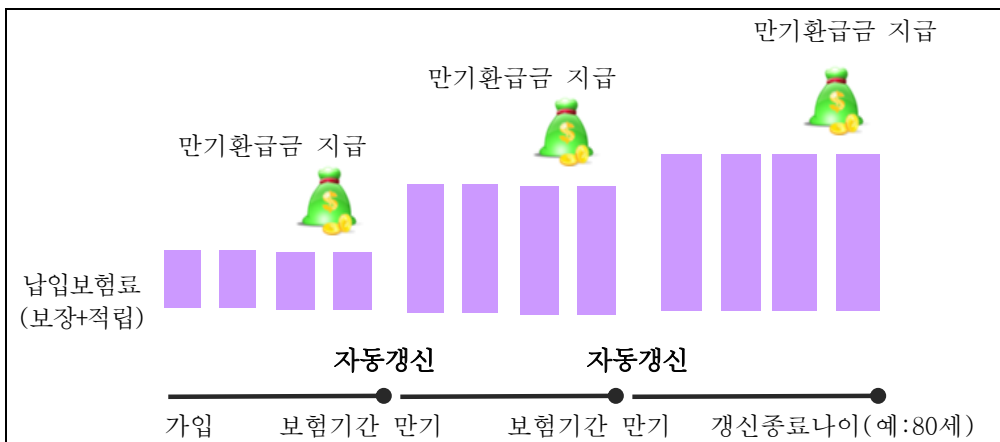
Q) 이 상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슈퍼플러스(1601) 리빙+ 재가입계약용(2601)(자동갱신형)은 한번의 가입으로 교통사고, 주택화재, 배상책임 및 도난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보상해드리는 생활보험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1) 자동갱신형 상품은 최초가입후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예:갱신종료나이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은 갱신전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회 이후의 갱신시에는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A2) 회사는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갱신될 계약의 보험기간이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내 일 것
- 2) 갱신일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A3) **갱신시**에는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갱신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갱신보험료 및 갱신 절차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도난손해 특별약관은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뉘는데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명기가재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을 말하며 명기가재에 해당하는 보험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일반가재는 위에서 정한 명기가재 이외의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2) 회사는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다 갱신전 계약에서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기간 동안 적립된 만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601) 리빙+ 재가입계약용(2601)(자동갱신형)은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최초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년	전기납	25~70세	월납
		5~9년	전기납	(80~보험 기간)세	
선택 계약	·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 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운전자 벌금(대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면허정지일당 · 운전면허취소보장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추가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추가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추가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도난손해 · 화재벌금 ·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5대골절 진단비	10년	전기납	25~70세	월납
		5~9년	전기납	(80~보험 기간)세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 5대골절 수술비 · 강력범죄위로금 ·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골프증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홀인원 비용 · 알바트로스 비용 · 김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2) 갱신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 종료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계약	·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년	전기납	35~70세	80세	월납
		1~9년	전기납	(80-보험 기간)세		
선택 계약	·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 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운전자 벌금(대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면허정지일당 · 운전면허취소보장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추가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추가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추가 ·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10년	전기납	35~70세	80세	월납
		1~9년	전기납	(80-보험 기간)세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 종료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배상책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도난손해 · 화재별금 ·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 사고 별금 · 골절 진단비(치아과절(깨짐, 부러짐) 제외) · 5대골절 진단비 · 5대골절 수술비 · 강력범죄위로금 ·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골프중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홀인원 비용 · 알바트로스 비용 · 김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별금비용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주1)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2) 기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 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1.0%)

③ 중도인출

-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중도인출

금은 인출시점에서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 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2)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 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3)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비운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운전자 별금(대인)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 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4)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5)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및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은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6)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및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7)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8)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9)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 가능합니다.

- (10)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은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11)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및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은 최고 3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 (12)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13)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추가특별약관 및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은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14)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5)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가입금액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 벌금(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면허정지일당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가입금액 700만원 기준> <table><tr><th>상해등급</th><th>지급액</th></tr><tr><td>1급</td><td>700만원</td></tr><tr><td>2급</td><td>400만원</td></tr><tr><td>3급</td><td>300만원</td></tr><tr><td>4급</td><td>150만원</td></tr><tr><td>5급</td><td>80만원</td></tr><tr><td>6급</td><td>40만원</td></tr><tr><td>7급</td><td>20만원</td></tr><tr><td>8~14급</td><td>10만원</td></tr></table>	상해등급	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4급	10만원
상해등급	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 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가입금액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화재 또는 붕괴 등의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신는 비용)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임차자 (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함)	가입금액 한도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 제외)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대인(1명당): <table><tr><td>사망</td><td>1억원 한도</td></tr><tr><td>후유장애</td><td>1억원 한도</td></tr><tr><td>부상</td><td>2,000만원 한도</td></tr></table>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도난손해	명기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단,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 (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table><tr><td>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td><td>1,500만원 한도</td></tr><tr><td>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td><td>2,000만원 한도</td></tr></table>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강력범죄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 cm당 7	500만원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원(단, 3cm 이상) 지급	
골프중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골프중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홀인원 비용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홀인원 비용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가입금액 한도
알바트로스 비용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알바트로스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및 이벤트홀 제외) ※ 알바트로스 비용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가입금액 한도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가입금액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대인),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화재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홀인원 비용, 알바 트로스 비용,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 화재 통합보험 NEW 슈퍼플러스(1601) 리빙+ 재가입계약용(2601)(자동갱신형)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Ⅳ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26년 1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2.32%입니다. 단, 최저보증 이율은 연단위 복리 1.0%입니다.

보장성 공시이율Ⅳ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장성 공시이율Ⅳ는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적용위험률 예시>

(기준: 자가용운전자, 40세, 기본계약)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교통상해 사망률	0.000133	0.000069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률	0.000015	0.000004
교통상해 80%미만 후유장해 지급률	0.000057	0.000050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 월납)

남자(%)	여자(%)
92.7	92.3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슈퍼플러스(1601) 리빙+ 재가입계약용(2601)(자동갱신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10년납 10년만기, 아파트 1급, 건물면적 100m², 보험료 월납 7만원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억원
 - 선택계약 :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1억원,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10만원,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특별약관 1억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1억원

(단위 :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예상 해약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연단위 복리 2.32%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2.32% 가정 시 ^{주2)}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840,000	529,633	63.0%	534,414	63.6%	534,414	63.6%
3년	2,520,000	1,943,057	77.1%	1,984,654	78.7%	1,984,654	78.7%
5년	4,200,000	3,383,245	80.5%	3,500,018	83.3%	3,500,018	83.3%
7년	5,880,000	4,851,959	82.5%	5,084,804	86.4%	5,084,804	86.4%
10년	8,400,000	7,033,976	83.7%	7,523,488	89.5%	7,523,488	89.5%

-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2.32%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Ⅳ (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2.32%)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2.32%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2026년 현재 연단위 복리 2.5%)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Ⅳ (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2.32%)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주3) 실제 해약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Ⅳ (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2.32%)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Ⅳ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로 합니다.
- 주4)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Ⅳ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보장성 공시이율Ⅳ는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주5)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2026년 현재 2.5%입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슈퍼플러스(1601) 리빙+ 재가입계약용(2601)(자동갱신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